

1. 개정이유

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업착수서 및 사업종료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(안 [별지 제11호 서식])

- 「사방사업법」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제 호

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방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호 중 “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사업 착수서를,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
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”를 “착수해야 합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지 제11호서식] 유의사항 1.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에 <u>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를,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</u> 2. (생략) 3. (생략)	[별지 제11호서식] 유의사항 1. ----- ----- <u>착수해야 합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